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2. 11 선고 2024가단505008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

대리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

담당변호사 배은서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1. 20.

판결 선고2024. 12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8,812,548원 및 그 중 37,601,450원에 대하여 2023. 8. 25.부터 2024. 2. 5.까지는 연 8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)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최미영

별지